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200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476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200683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변론종결 2023. 6. 20.

판결선고 2023.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망 D과 소외 E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457,53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은 13,474,519원, 피고 C는 8,983,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62149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4. 승소판결을 받고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E에 대한 2023. 1. 6. 기준 위 판결금 채권은 22,457,533원(원금 7,738,398원, 이자 14,719,135원)이다.

나. E의 어머니 F은 2012. 10. 30.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 G, H, I, E, 대습상속인 J, K, L는 2020. 11. 16.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대구 중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I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0. 11. 26. 제191846호로 2012.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21. 6. 10.경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N에 매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은 2022. 8.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가 위 I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망인 사망 직후 망인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I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는데, I의 투병생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11.경 I이 사망 전에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20. 11. 16.자로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2012. 10. 30.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 6.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망 I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20. 11.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2. 10. 3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0. 11. 16. 작성되었는데, 망인 사망 이후 약 8년이 경과한 2020년에 이르러서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이유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약 7개월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주식회사 N에 매도되고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등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리하고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1988년경부터 망인이 살고 있던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으로서 망 I과 그 가족들은 2008.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망인의 사망 4개월 전인 2012. 6. 11.경 경산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다시 망인의 사망 이후 망 I과 그 가족인 피고들이 거주하는 등, 장남인 망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로 거주하면서 관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G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아버지 망 O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망 I에게 주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사망 이후 망 I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망 I이 당뇨를 앓으면서 등기부상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④ E 외 G, H, 대습상속인 J, K, L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I과 E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작성된 2020. 11. 16.경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2. 10. 30.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I과 E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2. 10. 30.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